

FTA 파고를 넘기위한 농어업 시설현대화,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로 지원

농식품부 보도자료

주요 내용

- ◇ 농어업 분야 한·미 FTA 핵심대책으로서 '12년부터 신규 추진 중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(이차보전)에 대해 농신보 특례보증
- 보증한도 확대(현행 : 개인 및 단체 10억원, 법인 15억원 → 개선 : 30억원, 50억원) 및 보증심사 시 가점(5점) 부여

◎ 농림수산식품부, 금융위원회, 기획재정부 (이하 관계부처)는 농어업 분야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(이하 농신보) 특례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.

- 한·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, 농식품부는 '12년부터 신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(이차보전)을 추진 중에 있다.('12년 2,125억원, 금리1%, 3년거치 7년 상환)
- 다만, 이 자금은 농어업 분야 다른 투자에 비해 규모가 큰 융자금이므로 담보문제 해소가 전제되어야만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

하고,

- 현행 농신보 제도는 보증한도 등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여러 장치가 있어, 새롭게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(이차보전) 대상자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기에 금번 특례보증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.

◎ 금번 신설되는 농신보 특례보증 내용은,

- '12년 신규로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(이차보전) 대상자가 농신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한정되는 내용으로서,
- ① 동 사업자금의 지원 상한액을 감안하여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,

* 현행 : 개인 및 단체 10억원, 법인 15억원 → 개선 : 30억원, 50억원

② | 동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(5점)을 부여한다.

* 보증금액 결정 방법 : (심사평점 / 80점) × 소요자금

◎ 관계부처는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들이 금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정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, 이 밖에도 농림어업인의 농신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.

○ 2012년부터 농신보 보증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전액보증 한도를 당초 1,0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,

* 2,000만원 초과 시 부분보증 적용(농어업인 · 농어업법인 85%, 그 외 80%)

○ 최신 심사기법을 반영하고, 기술 및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액보증 심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.

◆ 관련부서 :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
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
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

◆ 담당 공무원 : 정아름 사무관(02- 500 -1748)
김경관 사무관(02- 2156-9754)
이동각 주무관(02- 2150-7355)

(별첨)

시설현대화 활성화를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

▶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- 농어업분야 FTA 핵심 대책으로서 시설 현대화를 위한 '12년 이차보전 자금 신규 반영 ['12년 2,125억원 지원(예산42억원)]
- 시설현대화자금은 고액의 융자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취약한 담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에 의문

▶ 그간의 추진 경과

- FTA 대책으로 '12년 신규 반영된 시설현대화사업(이차보전)에 대해 농신보 제도개선 건의(농식품부)
- 농식품부, 금융위, 기재부 부처간 실무 협의 - 보증한도 확대(개인10억, 법인15억원 → 30억, 50억원), 보증심사 시 전문가 평가에 의한 가점 부여 방안 협의
-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안 심의회 상정(4.16) 및 의결(4.25일 시행 예정)

▶ 특례보증 신설 내용

보증대상	◦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「축사시설 현대화사업」 중 이차보전방식 사업대상자
보증한도	◦ 개인 및 단체(법인은 제외) 30억, 법인 50억원 적용
신용조사 우대	◦ 동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 5점 부여
구분계리	◦ 보증지원, 보증사후관리 등은 타 신용보증과 구분하여 계리